

#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2002~26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02. 7. .  
제 출 자 : 거 창 군 수

## 개정이유

- 병역법의 개정으로 병무사무를 2002.7.1부터 지방병무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실과장의 분장사무를 개정코자 함

## 주요골자

- 민방위 및 병무에 관한 사항 중 병무업무를 삭제함

## 개정근거

- 병역법 제78조 제2항
- 시군 병무사무 위임폐지에 따른 정원조정지침  
(경남도 행정12200-11171(2002.6.24))

#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2항 제4호의 바목 중 “민방위 및 병무에 관한 사항”을 “민방위에 관한 사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<p>제 4 조 (실 · 과 · 지원단의 설치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실장 · 과장 · 지원단장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</p> <p>4. 자치행정과장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마. (생 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바. <u>민방위 및 병무에 관한 사항</u></p>	<p>제 4 조 (실 · 과 · 지원단의 설치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자치행정과장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바. <u>민방위에 관한 사항</u></p>